

**서울特別市麻浦區地方別政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  
中改正條例(案)**

서울特別市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  
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2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①법 第2條 第2號에 규정된 公務員중 동  
장을 제외한 別定職公務員의 任用등에 관  
하여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 
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  
에 의한다.

第7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①別定職公務員의 勤務상한 年齡은 相當계  
급에 해당하는 一般職公務員의 停年에 준  
하는 年齡으로 하고, 근무상한 年齡延長은  
一般職公務員의 停年延長에 관한 規定을  
준용한다.

<별표1> 第1號중 화생방지도원란의 6級

상당란의 任用資格란 第2號중 “2年”을 “3  
年”으로하고

<별표1> 第2號중 전산처리사란, 기계처리  
사란, 전산전기기사란, 전산기계기사란, 천공  
원란은 削除한다.

<별표1> 第3號중 부녀상담원란의 6級  
상당란의 任用資格란 第4號중 “2年”을 “3  
年”으로, 동란의 7級 상당란의 任用資格란  
第3號중 “2年”을 “3年”으로 한다.

<별표1> 第6號중 지도사란의 6級 상  
당란의 任用資格란 第3號중 “2年”을 “3年”으  
로, 동란의 7級 상당란의 任用資格란 第4號  
중 “2年”을 “3年”으로, 공과금요원란의 任用  
資格란 第2號중 “1年6月”을 “2年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條例는 공포한날부터 施行한다.

**新·舊 條文 對比表**

現 行	改 正 (案)
<p>第2條(적용범위) ①法 第2條 第3項 第2號 에 規定된 別定職公務員의 任用등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條例가 정한 바에 의한다.</p>	<p>第2條(적용범위) ①法 第2條 第3項 第2號 에 規定된 公務員中 洞長을 제외한 別定職 公務員의 任用등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특 별한 規定이 있는 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
<p>② (생략)</p> <p>第7條(근무상한연령) ①別定職公務員의  근무상한  연령은 相當계급 에 해당하는 一般公務員의 停年에 준하는 年齡으로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第7條(근무상한연령) ① 別定職公務員의  근무상한연령은 相當계급 에 해당하는 一般職公務員의 停年에 준하는 연령으로하고,  근무상한  연령연장은 一般職 公務員의 停年延長에 관한 規定을 준용한 다.</p>

現 行

<별표1> 別定職公務員 任用資格基準

1. 비상대비분야

직명(위) 및 업무 구분	직급	직무 내용	임 용 자 격	근거
화생방 지도원	6급 상당	(현행)	1. (현행) 2. (7급 상당)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	

2. 전산분야

3. 부녀청소년, 아동복지분야

직명(위) 및 업무 구분	직급	직무 내용	임 용 자 격	근거
부녀상담원	6급 상당 (수석상담원)	(생략)	1~3. (생략) 4. 부녀상담원 (7급)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	
"	7급 상당 (일반, 윤락 여성 상담)	(")	1~2. (생략) 3. 부녀상담원 (8급 상당)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	
"	8급 상당 (")	(")	1~2. (생략) 3. 부녀상담원 (9급 상당)으로 1년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	

改 正 (案)

<별표1> (현행)

1. (현행)

직명(위) 및 업무 구분	직급	직무 내용	임 용 자 격	근거
화생방 지도원	6급 상당	(현행)	1. (현행) 2. .... .....3년 ..... ...	

2. <삭 제>

3. (현행)

직명(위) 및 업무 구분	직급	직무 내용	임 용 자 격	근거
부녀상담원	6급 상당 (수석상담원)	(현행)	1~3. (현행) 4. .... .....3년 ..... ...	
"	7급 상당 (일반, 윤락 여성 상담)	(")	1~2. (현행) 3. .... .....3년... ..... .....	
"	8급 상당 (")	(")	1~2. (현행) 3. .... ..... .....2년... ..... .....	

現 行				
직명(위) 및 업무 구분	직급	직무 내용	임 용 자 격	근거
가 정 상담원	6급 상당 (수석 상담원)	(생략)	1. (생략) 2. 가정상담원 (7급 상당)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	
	7급 상당 (일반 상담원) (88, 8.16 신설)	(생략)	1~2. (생략) 3. 가정상담원 (8급)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	

改 正 (案)				
직명(위) 및 업무 구분	직급	직무 내용	임 용 자 격	근거
가 정 상담원	6급 상당 (수석 상담원)	(현행)	1~2 (현행) 3. .... .....3년 .....	
	7급 상당 (일반 상담원, (88, 8.16 신설)	(현행)	1~2. (현행) 3. .... .....3년 ..... .....	

6. 행정관리분야

직명(위) 및 업무 구분	직급	직무 내용	임 용 자 격	근거
지도자	6급 상당	(생략)	1~2. (생략) 3. 일반직 7급 (별정직 7급 상당 포함)으로 2년이상 행정근무 경력자 4. (생략)	
	7급 상당	(생략)	1~3. (생략) 4. 일반직 8급 으로 2년이상 생활체육 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5. (생략)	
공과금 요 금	8급 상당	(생략)	1. (생략) 2. 9 급 이 상 공무원으로서 공과금 경력이 1년6월이상인 자	

6. (현 행)

직명(위) 및 업무 구분	직급	직무 내용	임 용 자 격	근거
지도자	6급 상당	(현행)	1~2. (현행) 3. .... .....3년 ..... 4. (현 행)	
	7급 상당 상당	(현행)	1~3. (현행) 4. ....3년 ..... 5. (현 행)	
공과금 요 원	8급 상당	(현행)	1. (현행) 2. .... .....2년 .....	